

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서

 사상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

1. 예산 총칙

1조(예산의 규모) 2022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.

예산총액

(: 원)

구 분	예산액(1차추경)	기정예산액(본예산)	증감액	증감률
총 계	2,897,104,673	2,818,715,993	78,388,680	2.78%

○ 세입예산

(단위 : 원)

구 분	예산액(1차추경)	기정예산액(본예산)	증감액	증감률
총 계	2,897,104,673	2,818,715,993	78,388,680	2.78%
사 업 수 입	461,777,200	462,138,240	△361,040	-0.08%
보조금 수입	2,416,450,000	2,339,758,000	76,692,000	3.28%
후원금 수입	1,800,000	1,800,000	0	0
전 입 금	7,000,000	7,000,000	0	0
이 월 금	10,067,473	8,009,753	2,057,720	25.69%
잡 수 입	10,000	10,000	0	0

(: 원)

구 분	예산액(1차추경)	기정예산액(본예산)	증감액	증감률
총 계	2,897,104,673	2,818,715,993	78,388,680	2.78%
사 무 비	371,265,539	371,812,277	△546,738	-0.15%
재 산 조성비	1,790,000	0	1,790,000	100.00%
사 업 비	2,519,277,200	2,443,447,240	75,829,960	3.10%
잡 지 출	0	0	0	0
예비비및기타	4,771,934	3,456,476	1,315,458	38.06%

제2조(예산의 내역)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·세출의 명세는 붙임과 같다.

제3조(추가경정예산) 추경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다.

제4조(예산의 전용) ① 예산의 관간 전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.

② 예산의 항간 전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되, 100만원 이하의 예산 변경 시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.

③ 예산의 목간 전용은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.

제5조(예비비)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지출 초과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예산의 1% 내외를 예비비로 계상한다.

②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고 추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예산의 편성·집행·회계관리) 예산의 편성·집행·회계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 지침을 준용한다.